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2011년 6월 22일

대한민국

서 문	6
제1조~제2조	9
제3조	12
제4조	14
제5조	15
제6조	17
제7조	19
제8조	20
제9조	21
제10조	22
제11조	23
제12조	24
제13조	25
제14조	28
제15조	29
제16조	30
제17조	32
제18조	32
제19조	33
제20조	35
제21조	37
제22조	39
제23조	40
제24조	41
제25조	44
제26조	46
제27조	47
제28조	51
제29조	52
제30조	54
제31조	55
제32조	57
제33조	59

표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유형별 인지도 (2009. 기준)	62
표 2.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인지도 (2009. 기준)	63
표 3.	장애인복지시설 입원 장애인 인지도 (2009. 기준)	64
표 4.	‘연도’ 및 ‘월평균’ 장애인 인지도 (2001.11.~2010.9.)	65
표 5.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9. 기준)	65
표 6.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9. 기준)	66
표 7.	진정사건 처리 현황	66
표 8.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66
표 9.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67
표 10.	성별 취업장애인의 현황	67
표 11.	성별 장애인 교육 현황	68
표 12.	여성가족부 소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및 예산	68
표 13.	장애여성 전문 가족상담소·보호시설 현황 (2009. 기준)	68
표 14.	성별·연령별·등급별 장애인 인지도 현황 (2009. 기준)	69
표 15.	18세 미만 장애아동 인지도 (2009. 기준)	69
표 16.	장애아동수당 지급률 및 집행 현황	70
표 17.	장애아동 무상보육률 및 현황	70
표 18.	장애아동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현황	70
표 1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현황	70
표 20.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 (2010. 기준, 예산: 6억 원)	71
표 21.	고용노동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 (2009. 기준, 예산: 10억 원)	71
표 22.	보건복지부 장애인식 개선 사업 (2009. 기준, 예산: 5.45억 원)	72
표 2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 (2009. 기준)	72
표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도 (2009. 기준)	73
표 2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73
표 26.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추진 현황	73
표 27.	‘재화·용역 제공’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74
표 28.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74
표 29.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2008. 기준)	74
표 30.	‘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75
표 31.	정신보건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2009.1.1.~2010.11.17.)	75
표 32.	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및 예산 (2010.11. 기준)	76
표 3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현황	76

표 34.	활	예산 (2009. 기준)	76
표 35.	도	용 의사	77
표 36.	교	적합률	77
표 37.	여객	적합률	78
표 38.	보행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78
표 39.	9개도	을	78
표 40.	도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	79
표 41.	부가	인보장 품목	79
표 42.	장애	적급여 현황 (2009. 기준)	80
표 43.	저소	위한 장애인보조기 지원품목	80
표 44.	각종	및 감면제도	81
표 45.	장애	제작 지원 현황	82
표 46.	방송	보급 현황	82
표 47.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제정 현황		82
표 48.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현황		83
표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83
표 50.	장애학생 인원 및 학교 유형		84
표 51.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아동 수 (2009.기준)		85
표 52.	교육기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및 예산		85
표 53.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85
표 54.	순회교육 실시 현황		86
표 5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 및 지원 현황		86
표 56.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설치 현황		86
표 57.	시·도 교육청별 장애 학생 수 및 교원 수		87
표 58.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관련 정부 예산		87
표 5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 사항		87
표 6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기관 및 예산 현황		88
표 61.	보건소 관리 재가 장애인 현황		88
표 62.	고용 관련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88
표 63.	연령별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88
표 64.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2009. 기준/ 당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		89
표 6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89
표 6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 지원 사업 및 예산		90
표 67.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예산		90
표 68.	장애인 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종사상 지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수		90
표 69.	장애인 가의 월 평균 소득액		91

표 70.	장애인 빈곤율	92
표 71.	장애수당 지급금액	92
표 72.	점자 선거 공보물 (표 5.2. 지방선거 기준)	92
표 73.	정부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단체 관계자 현황	93
표 74.	장애인 문화향수 사업 예산 및 예산	93
표 75.	장애인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편의증진 사업 및 예산	94
표 76.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예산 현황 (2009. 기준)	94
표 77.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조사 현황	95
표 78.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 주요 의견(2010.11.11. 공청회)	99
표 79.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및 기능(2010. 기준)	100
표 80.	장애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103

성

리를 증
과 같은
정신과 용

을 해 업무상 채해로 안
하였다. 1977년에는 「특수교육
채인 초석을 꺾었다. UN이 정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였던 1981년에 대한
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제정하
지정책의 되었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의무고용제를
발할 권리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국가정책이 출발되었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로 및 설비 등에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
법률 중 도로 및 교차수단,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은 2005년에 제정된 「교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분리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협약이 채택된 이듬해인 2007년에는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
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협약을 국 적으로 이

행할 수 있는 포괄
2007년에는 「장애인
체하는 법률로 새
담고 있다. 2008년
이 참여하는 기업
일 수 있는 계기
중증장애인에 대
소득을 보장하고
보장에 대한 국가적

4. 정부는 1994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제1차 개정 1994년)을 제정하고, 정부는 제1차 계획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제1차 1994~1998)에 따라 ‘장애인 등록·판정·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의 경제·문화·체육의 강화, 취업 지원 및 직업 교육권 및 문화권의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증진 국가중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제1차 2000~2004)과 『교육·약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제1차 2007~2011)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제1차 2008~2012)을 통해 장애인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 계획들의 기본 목표나 주요 용은 정부가 2007년 5월에 수립한 인권에 관한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포함되어 있다.

5. 대한민국의 장애인정책은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토대로 최근 큰 변화의 과정에 놓여있다. 협약의 비준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정책이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실질적인
인활동보조제도'는 그동안 지원체계가
호와 수용' 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다. 2009년에 도입된 '장애아동재활치료
위한 특화된 지원제도로써 장애아동과
되고 있다. 2010년 장애인 소득보장을
및 자립생활지원제도로써 2011년에 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틀을 갖추

6. 대한민국은 협약 상의 권리에
으나, 장애인이 각 권리를 충분히 향유
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장애인연
도는 그 규모와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7. 지적·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개선도 새로운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한 정책기획단」과 「장애인서비스 지원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 정부는 이 국가보고서를 작성
인단체들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수렴
위한 자문단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체 관계자로 위촉) 이들이 자문회의를
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2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1회), 보
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며(2회/부록 표
서에서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장애
조정실무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수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9. 「대한민국헌법」(1948.7.제정, 1997.10.개정)은 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제10조). 협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이에 준하는 다른 국제조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제6

가인권위원회법」은 협약 제1조의 장애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11. 상기 법률들은 장애의 정의에 “오랫동안” 또는 “장기간”(long-term)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 - 227호)은 동법 상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를 장애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체의 절단장애는 별도로 지속적인 치료기간을 요하지 않으나, 시·청각 장애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이나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것을 요하고, 호흡기 장애는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것을 요한다.

12.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장애인은 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을 일컫는다.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32조), 여러 법률 및 정책은 이러한 등록된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유형 및 등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애와 관련된 분야 전문의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이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유형을 15가지로 구분하고 있고(별표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별표 1). 2009년 12월 현재 등록장애인의 수는 총 2,429천명이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인구 49,773천명의 4.88%에 해당한다(부록 표2 참조). 이들 중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23,243명으로 파악된다(부록 표3 참조).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제도와 장애등급제도에 대하여는 의학적 판단만으로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함께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의학적 판단 이외에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판정체계를 새로 구축하여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3.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제수단을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하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호). 동법에서 전자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이나 기호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하고, 비전자정보는 ‘전자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제3조 제8호).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협약 제2조에 규정된 의사소통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16. ‘보편적 디자인’ 개념은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나 정책에서 정의된 바 없

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연
부 적용되고 ~~제47항~~ 차

제3조

17.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법」 등을 ~~해 장애인~~ 존엄성
균등, 자립에 대한 존중 등 협약이 천
록 노력하고 있다.

18.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선택
존중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은 자신의
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 근로자를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자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식을 강요하는 것(제23조 제3항), 가족
애인을 배제하는 것(제30조 제1항) 등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

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은 공적(public) 영역과 사적(private)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자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20.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
인 사회참여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은 그 목적
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치를 꾀현하는 것

21. 「장애인
체의 책임으로 규
하여금 중증장애
꾀의 제공, 그 밖
53조, 제55조 등).

22.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금지 및 권리 등에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시설물, 교통수단 및 토
비전자정보, 의사, 각종 서비스 기기 등에 대한 접근
성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법률」은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은 교통수단 및 도로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23.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 공무원, 근로
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
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그와 같은 교육 및 홍보의 대부분은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장애인을 인류 및 인간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인
정하는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 “차이
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24. 대한민국은 장애여성의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각종 법적·정책적 조치
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꾀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 영
역에서 장애여성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34조). 「장애
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제3조),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하도록 함으로써(제21조) 장애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증진
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이 각종 권리 보호에서 배제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꾀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아동
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별

도로 두고 있다(제35조, 제36조). 또한 장애아동의 학습·문화·체육·여가·복지·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과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아동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 용에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는 것,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양가족에
대해 양육 상담을 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다.

제4조 일반 의무

25. 대한민국은 법률과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건축기본법」(2007.12. 제정)
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
도록 하고 있고(제7조 제2항), 「여성발전기본법」(1995.12.제정)은 여성 복지를 위
한 시책 강² 시 장애여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또한 「고용정
책기본법」(1993.12.제정, 2009.10.전부개정)은 취업이 어려운 자의 고용 촉진을 위
한 정책 수립 시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용을 포함하고 있고(제6조 제1항 제6호), 「직업안정법」
(1961.12.제정)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제공, 직업상담
등의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에 장애인을 특별히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2호, 2009.10.전문개정).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2007-2011)』에서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장애
인을 포함시켜 그 인권보호·증진을 추²하고 있고,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보육 및 산모 서비스 제
공 시 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가정기본법」(2004.2.
제정)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제21조 제4항, 제25조 제2항), 동법에
근거하여(제15조) 수립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5~2010)』에서는 ‘장애아
가족 돌봄·휴식 지원’과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추진
했으며, 『제4차 청소년정책 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장애청소년의
교육·복지·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6. 보건복지부는 협약의 국 이행을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²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지방자

가.
을
단체
1
정
참

4. 시키기 이도보조하기

~~통신기기, 이동통신기기~~
$$+ \frac{1}{2} \left(\frac{\partial^2 \phi}{\partial x^2} + \frac{\partial^2 \phi}{\partial y^2} \right) = -\frac{1}{2} \left(\frac{\partial^2 \phi}{\partial x^2} + \frac{\partial^2 \phi}{\partial y^2} \right)$$

우하·여 장애인에게 접근

판단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제4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43조). 가해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법무부장관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제50조). 2010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총 30건을 시정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이 중 지방공기업의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사건에 대하여 2010년 4월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 장애인은 해당 지방공기업에 복직되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손해배상은 물론 피해자의 청㉠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할 수 있다(제46조, 제48조 제2항). 동법은 피해자에 대한 ㉠제와 별도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9조 제1항).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도 장애차별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 후 ㉠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를 포함하여 19개의 사유로 고용, 재화와 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2조 제4호),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30조)(부록 표4-6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하여 장애차별을 조사하고 ㉠제하였으나,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당한 장애인을 조사·㉠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접수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2,938건이며 그 중 처리 건수는 2,035건이다(부록 표4 및 표7 참조).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입학, 수업 등 교육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법은 이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4조), 「~~교수·약자의 아동편의 증진법~~」은 아동권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3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아니하고(제4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을 우대하며(이 보고서 제132-133항 참조), ‘장애인 대입 특례입학제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을 우대한다(이 보고서 제116항 참조).

제6조 장애여성

33. 2009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여성은 1,003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표8 참조).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로 인하여 교육, 고용, 정보, 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대한민국은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은 장애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장애여성이 장애와 성(性)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여성’ 또는 ‘장애인’ 관련 종합정책에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두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교육, 경제활동 지원, 사회참여 확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5.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특별히 장애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애여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더 높은 액수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여성할당률 1% 이상인 사업주의 36%, 직업훈련 대상자의 30% 이상을 장애여성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6%로 일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부록 표9 및 표10 참조).

36.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남성에 비해 낮다(부록 표11 참조). 한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여성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직업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에 정부는 전국에 16개소를 지정하여 장애여성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보건·복지 교육, 사회 적응 및 참여, 문화향유 및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2009년에는 대학 및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바리스타, 디지털이미지편집, 텔레마케터, 경리업무 과정 등 장애여성 적합 직종 특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장애여성 6,331명을 교육하였다. 2010년에는 20개소의 장애여성 어울림센터를 지정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연계(직업훈련, 건강·의료, 법률, 취업알선 등) 및 사후관리 등 장애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활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저소득 장애여성에게 학습용 PC를 제공하고, 여성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부록 표12 참조).

3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누ㄹ든지 장애여성에게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안 되고(제33조 제2항), 사용자가 직장보육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정부는 장애여성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를 가진 산모에게 4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로 지정되어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관에 연계시켜 주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복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부록 표

제7조 장애인

39. 2009년 12월 현재 등록 장애아동 10만 7천 5백 40명은 '지적장애'가 44.3%, '뇌병변장애'가 16.3%, '자폐성장애'가 15.5%로 나타났다(표14 및 표15 참조). 대한민국은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1961.12.제정),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1991.12.제정), 「청소년기본법」(1991.12.제정), 「초·중등교육법」(1991.12.제정)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장애아동의 교육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이들에게서 교육·훈련·건강보육·문화·스포츠·취업준비·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장애인에게 유가·학대·착취·감금·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것, 장애아동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무리한 재활치료를 강요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41. 정부는 장애아동이 생활안정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및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부록 표16~표18 참조), 저소득 가정의 장애아동에게는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을 위한 재활치료 바우처를 매달 지원하여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19 참조).

8조 인식제고

한편,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한 장애인체험프로그램 운영

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 교육교재 등을 개발·보급할 것을 의무화하고(제4항), 동 조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영상, 사업주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에 대한 TV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부록 표21 참조).

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개선 및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제6항). 정부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 법을 홍보하고, 법에 대한 해설집과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부록 표22 참조).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부록 표23 및 표24 참조).

제9조 접근성

45. 대한민국은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건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공간 환경이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건축물을 접근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러한 편의시설의 예로는, 장애인의 ~~이행이 가능한~~ 접근로·복도·계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전 설비 등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분야별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2008년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법적 의무 대비 실제 설치율은 83.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76.6%, 공원은 66.0%였고, 이들의 적정 설치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은 각각 59.7%, 69.1%, 57.9%였다(부록 표25 참조).

4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제12조). 정부는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5-2009)』에서 편의시설 설치율 85%를 목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7.5% 밖에 달성하지 못한 점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편의시설 비율이 55.8%인 점을 감안하여,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10-2014)』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을 88%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편의시설의 적정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의 건축 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건축기본법」을 개정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물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려 200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부록 표26 참조)(그 외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시설 종류 및 현황은 이 보고서 제90항~제94항 참조).

47. 정부는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의거, 이를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을 기준으로 총 22개의 도로 및 건축물에 이와 관련한 인증을 했다.

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법인·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21조). 그 정당한 편의의 예로는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화면읽기, 음성서비스 등이 있으며, 동법은 편의 제공의 부담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주체별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점을 단계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제15조 제1항)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쓰이는 각종 기기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국에는 1,104대의 장애인용 CD·ATM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은행들은 2013년까지 1,0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CD·ATM기 5,000여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향후 3년간 21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쉽게 은행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금융상품 조회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보고서 제98항~제100항 참조).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상기 접근성을 제공받지 못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27 참조).

제10조 생명권

50. 「대한민국헌법」에 생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54. 정부는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안전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고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복지사업법」(1970.1.제정) 제34조의3에 의거,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안전위기의 유형은 화재, 시설물 붕괴, 태풍 및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을 포함하며, 안전조치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는 것, 응급조치 및 사후복 ▣수습체계를 ▣축하는 것 등이 있다(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

55. 정부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1984.8.제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시 입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산 및 임시병합을 위한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는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시 재가 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이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유기 장애인을 임시 수용하며,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56.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제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법률들에 의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법 앞의 동등한 인정과 법의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국 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률상 재산의 소유권과 상속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57. 대한민국은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민법」(1958.2.제정) 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히려 그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그들의 행위능력 및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민법」 제13조)를 개선하여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용품 ▣입 등 일상

적이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기타 법률행위를
록 하고 있다. 또한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대
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후견제도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후견인과 피후
후견인 대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

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공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공공영역에
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
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며(제16
조),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함(제2조).

59. 정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실무자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률
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과 관련
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733명의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09년 기준, 30여회 5,530명 참여). 한편, 장애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로 결
정하고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하거나 권고사례집에 실
어 배포함으로써 동일한 차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과 차별에 대한 대중 인
식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으로 하
여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으로써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에서 사법 및 행정 절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같은 법은 공공기관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26조).

6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6항).

62. 「형사소송법」(1954.9.제정, 2007.12.개정)은 피고인이 농아자이거나 피고인에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동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제33조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고(제282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83조). 2010년, 대법원은 2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건과 3급 청각장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881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 4629판결). 또한 「형사소송법」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조사·신문대상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제244조의5)나 재판장 또는 법관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제276조의2)는 동석하게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제221조 제3항)나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제163조의2 제2항)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의
사소
법률
경찰청
장애인 등의
이 가능한 보조인
수사할 때에는 장애
장애로 인하여 수사

64. 「민사소송법」(1963년 제정)에 따라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수익~~에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사소~~수익~~에
있다(제143조).

65. 「출입국관리법」(1963년 제정)에 따라 출입
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신문
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 ~~수익~~으로 하여금 ~~수익~~하게 할 수 있고, 문자로
묻거나 질문하게 할 수도 있다(제48조).

66. 정부는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부록 표28 참조).

67. 정부는 경찰관이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직장훈련 교육 과정에 장애인 인권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직원 22만 명(연인원)이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용이 포함된 “경찰과 인권”, “피해자보호” 등의 인권과목을 이수하였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68. 「인신보호법」(2007.12.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각종 의료·복지·수용·보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법원에 「제청」을 할 수 있다(제2조, 제3조). 법원은 「제청」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제16조). 대한민국은 2010년 6월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제청」권자에 수용시설 종사자를 추가하였고(제3조), 수용자가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동법에 따른 「제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3조의2 제1항),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제20조).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 6월 이후 2010년 10월말까지 법원에 「제청」이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총 305건이었고, 이 중 청이 인용되어 수용해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32건이었다.

69.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법률로는 「정신보건법」(1995.12.제정)이 있다. 이 법에는 정신보건시설 입·퇴소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및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비자의입원율(involuntary admission)이 매우 높고(부록 표29 참조), 필요 이상으로 입원이 장기화되어 있으며, 퇴원 후 즉시 재입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0월, 상기 실태조사 결과와 정신장애인의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개정 및 정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자의입원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입·퇴원 과정에서 적정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입원과 재입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2009년에 조사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본인의 의지로 입소’한 비율이 9.6%, ‘가족 또는 지인의 권유로 입소’한 비율

이 49.8%,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이 40.5%로 나타났다.

7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인신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4항). 한편, 대한민국은 교정관계 법령이 수용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950.3. 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과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5조, 제54조 제2항). 또한 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수형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것(제50조),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도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제51조),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는 것(제52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총 9개이다(참고로, 총 교정시설은 49개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71. 「대한민국헌법」은 고문과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제12조 제2항). 고문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불이익은 고문방지협약 최초 보고서 제105항 지 제11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CAT/C/32/Add.1 para. 105-114).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2006.6.전부개정)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존중과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를 규정하고(제2조, 제3조),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보호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 제68조). 경찰청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10.제정, 2008.10.

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비롯하여 폭언, 강압적 어투, 비하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되며(제8조), 동 규칙은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제14조), 인권보호센터(제38조) 등을 설치하여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39조). 이상과 같은 고문 또는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및 이로부터의 보호와 ㄹ 제는 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72.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고지된 동의 없이 의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약사법」(1953.12.제정)은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시험 전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7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ㄹ 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을 집단따돌림 하거나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은 사적인 공간·가정·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을 유기, 학대하거나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역시 금지하고 있다(부록 표30 참조). 상기 법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상담 및 치료, 법률 ㄹ 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7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6월 한 진정 사건에서 장애인시설장이 해당 시설 생활인의 장애수당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ㄹ 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금전적 착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을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신체를 포박하는 가혹행위 등이 동

법 상의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금전적 착취에 대해 횡령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학대와 관련하여 벌 폐쇄를 명령한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학대하고 감금한 6개 시설

75. 「정신보건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 내에서의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가혹행위 및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정신보건시설에 진정되고 있어(부록 표31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중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정신보건시설 및 기관에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 및 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76. 정부는 2010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장애인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금전적 착취 등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하거나 법률자문 및 공익소송을 지원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는 긴급위기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긴급분리조치, 현장조사 및 긴급거주지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부록 표32 참조).

77. 대한민국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제29조 제7호), 「청소년보호법」(1997.3. 제정)(제26조의2 제4호)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7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부록 표13 참조).

제17조 개인의 원

7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제31조 제2항)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의에 따라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게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제33조 제1항) 임신이나 강제낙태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80. 「정신보건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발적 입원(voluntary admission)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5항),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키는 행위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5항). 또한 법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후 강제적으로 치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81. 「정신보건법」이 명시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동의’의 의학적 견해는 ‘중앙정신보건심위원회’가 제공하며, 만일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치료가 행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치료행위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알게 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28조 제7항). 위에 언급한 기구들은 장애인이 고지된 동의와 자유의사 없이 의학적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독립된 심사기관에 해당한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82. 「대한민국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제14조), 이는 장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 에서 체류활동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규
입국 시 그 보호자나 국 초청인 및
체류 중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 한편,
장애인에 장애인 출입국전용심사대를 운영하여 장
의를 제공하고 있다.

요건을 정하는 「국적법」(1948.12.제정)은 장애
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한편, 정부는 자폐장
(1-3급) 등을 가진 외국인 중 부 또는 모가 한국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7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
이 에 이루어져야 한다(제44조 제1항). 또한 동법은
부모의 성명, 국적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제44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며, 자신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 기아 및 무국
모든 아동 역시 「국적법」에 따라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을 증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 대책을
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특히, 법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와 장애인보조기 등을 제공하고(제53조, 제55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54조).

87.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7개소이고 있는데, 정부는 그 중 5개소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57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이다.

88.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부록 표34 참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방문간호, 간병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대상자를 50,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증가하는 이용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대상자를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부록 표35 참조).

89.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립생활을 저해한다고 보고 생활시설을 폐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신축시설을 3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 중장애인을 위하여 전국 90곳에 지역사회가 정형 시설인 자립생활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생활시설 한 개소 당 평균 인원이 2007년 말 69명(314개소, 21,709명)에서 2009년 말 58명(397개소, 22,966명) (부록 표3 참조)으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2011년부터 탈시설 욕구가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한도에서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고(2009년 기준 894명, 128억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2010년 5개 시·도, 57명, 총 330백만원).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보고서 제142항 참조).

90.

여금 장

이용할 수

편의시설

약자용 조

▣ . 장애

도포장 및

의시설 설

의 51.7%

2010년 평

의 67.9%

을 갖추고

91.

인 등 교

명시하고 있

게 편리한 제

의 1/2, 시와

사업면허를

예산의 범위

령 제14조).

업자에게 지

스의 11%에

92. 「교

1/10 이상에

있고(제15조

규정하고 있

의 이동편의

도 역사를 대



「교~~차~~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애인 등 교~~차~~약자전용~~차~~역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고(제15조 제1항),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그 ~~구~~조 및 재질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사업자들은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바, 2010년 현재, 9개도 17개 도시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3.8%이고(부록 표39 참조),

2010년에는 5개 시·도에서 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다(부록 표41~43 참조). 장애인들의 철도 역사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다치거나 사고가 지속되는 등 리프트를 「장애인차고차법」에 규정된 보기에 어렵다고 보고, 도시철도에서 스컬레이터를 교체할 것과 정부에서 그 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2009년), 이에 따라 철도 사업자들이

9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탑승설비 등을 갖춘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현재, 16개 시·도에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은 총 1,302대로,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에 대해 나갈 예정이다.

9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유도신호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1항 관련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95. 정부는 장애인들이 이동보조기²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휠체어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²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이동보조기²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그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보행보조차 등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있다(부록 표41~43 참조).

96.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보조기²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보조기²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보조기²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67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각·청각·일상생활 보

[illegible]

의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ge Group	2006 (%)	2008 (%)
18-29	~45	~55
30-39	~55	~65
40-49	~65	~75
50-59	~75	~85
60+	~85	~95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일부 개정하여 장애인에게도 제공범위를 인터넷 티미디
확대하였다. 상가, 방송사,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티
미디인이 비장애인보다 쉽게 방송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촉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다(제21조 제3항). 2010년 중앙 지상파방송의 자막방송,
음 비율은 각각 96.0%, 5.1% 및 6.0%이며, 정부는 이와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화상 피해자에 대한 수화역사·수화자·수화자별금지 및 권리·제정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이 화상 피해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역사·문자역사·수화역사·보청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정부는 수화역사센터를 운영하고 (2009년 기준, 175개소 설치) 관공서 및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시

수화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과 하고 있다

101. 정부는 국립국어원, 장애인협회를 해
2000년부터 『한국표준수화 규범』을 비롯한 각종
법률·종교·전문 용어 등이 사전 등을 발간
하고 있다.

1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1994.1.제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처리·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1986.5.제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2000.1.제정)(제13조), 「의료법」
(1962.3.제정)(제19조), 「사회복지 사업법」(제47조) 등은 개인의 신체·건강상의 비
밀, 의료·재활 상의 기록, 환자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등이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열람·유포·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103. 일부 법률들은 장애인을 특정하여 그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예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
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
조 제1항). 또한 동법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제30조 제2항), 고용주가 장애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
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대
해 장애인복지상담원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용을 명시하고 있으며(제
33조 제2항), 「정신보건법」은 누른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녹음·녹화·촬영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제2항 및 제42조).

104.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보건법 제42조 결과에 따르면, 생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같은 사적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가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정부에 의견표명 하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제23조 가정과

105. 대한민국은 「건강가정기본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1.1. 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이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 성정체성의 존중, 장애아동의 가정에서의 보호,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의 보호 및 권리 존중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6.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동 법률과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2008~2012)』에 따라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저소득 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범위에서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부록 표48 참조). 2011년에 정부는 2,500가구에 동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그 외, 저소득 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무상보육료’ 및 ‘장애아동수당’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 제41항 참조).

107.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및 제2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아
한다(제10조 제3항).

관한 법률」은 임신, 출산, 양육 등
지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또한 동법
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불합리
할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제30조 제4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당
제5항).

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양육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양친
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5조 제1항 제3호) 장애인의 입양할 권리를 제
관련부처는 “현저한 장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에 있다.

제24조 교육

교육과 관련한 법률로는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기본법」(1997.12.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교육을 실시할 것”(제1조)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상기 법률들을 토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

1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진단, 진단 후 교육지원, 재활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그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교육환경에 배치되더라도 특수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2,683종, 보조공학기기 2,203종 59,174대를 비치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티미디어 자습서 및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정보단말기를 개발하여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FM보청기(1,775대)를 개발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였다. 또한 FM보청기를 개발·보급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FM보청기를 비치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9년 현재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다.

1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제15조, 제16조),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부록 표49 참조). 2010년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79,711명이며, 이들은 전국의 특수학교(150개교, 23,776명)와 특수학급(7,792학급, 42,021명),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6,775학급, 13,746명),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 168명) 등에서 각각 교육을 받고 있다(부록 표50 참조).

1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야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정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만 5세 유치원 과정 장애유아 1,921명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수는 총 290명이다(부록 표51 참조). 2009년 정부는 20개의 장애영아 학급을

운영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였고, 교육에 대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련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장애학생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 보조인력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52 참조).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연평균 700여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3.5%, 초·중·고등학교는 92.4%로 나타났다(부록 표53 참조). 정부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급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관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교에 권고한 바 있다.

1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급 학교의 장애에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또한 법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 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이에 정부는 2010년 1,407명의 순회교사를 확보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부록 표54 참조).

116. 정부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장애인 대입 특례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 제도에 따라 대학에 입학한 장애대학생은 1995년 8개교 113명에서 2010년에 88개교 656명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총 173개교의 5,716명이다(부록 표50 참조). 한편, 정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각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증장애학생에게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부록 표55 및 표56 참조).

1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평

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육청별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성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장애성인
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18.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제1항), '남녀'를 증진하기 위한 학교
의 기준과 -고 있다(제17조의2 제4항)
2010년, 특수교사 51,921명(34.9%), 남학생은 51,921
으로 남학생의

119.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통합교육~~
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 강좌를 9개교 이상에 설치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시행령」은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
으나(제22조), ~~정원준수율은 76.5%에 그치고 있다(부록~~
표57 참조).

제25조 건강

120. 대한민국은 「국민건강증진법」(1995.1.제정), 「국민건강보험법」(1999.2.
제정), 「의료급여법」(2007.12.제정), 「건강검진기본법」(2008.3.제정) 등에 따라 국
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정신
보건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1.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조~~하고(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생
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는 데 필요한 재활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본계획』과 『제2차 장애인정책발

별로 장애인 의료재활센터의 건립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은 “국민연금”이 30.1%, “소득보장”이 21.9%, “주거보장”이 19.9%로 가장 높았다(부록 표59 참조). 현재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는 재활의료시설 증·개축,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미생물 검사 지원 등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충족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24.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서 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재활(rehabilitation : CBR)’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과 재활치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역보건소로 하여금 장애인건강증진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국 253개 보건소(95%)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록 표60 및 표61 참조).

125. 대한민국은 재활위원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료 및 상담지도, 재활훈련 등을 제공하고,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26.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위생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차막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게 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바닥의 재질 및 부착물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26. 대한민국은 협약 비준 시 장애인 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 제25조(e)가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비준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상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상법」 제25조의 (e)의 유보 철회

제26조 가활(Habilitation)

127.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이 검진 및 재활상담을 통해 국가·공립·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재활치료 등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한다(제18조).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제19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평가, 직업 적응훈련 및 취업알선을 제공할 것을

128. 정부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재활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2010년 기준, 190개소). 장애인과 척수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립재활원은 2010년부터 4년 간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활교육시설, 자립생활 및 사회재활 훈련시설,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애인 종합 재활교육 훈련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129. 장애인의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물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수화·의지·보조기교정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 ‘가활’(加活)이란 ‘예전에 갖고 있지 않던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habilitation’을 번역한 것이다. ‘habilitation’은 득활(得活), 성활(成活), 훈련(訓練) 등의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 보고서에서는 가활로 사용한다.

등의 이 중 '사회', '물리치료사', '의지· 보조기' 있고 '수화·역사', '점역교정사'는 국가 공인된 정부는 언어치료사에게도 국가자격을 부여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재활원으로 하여금 생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에게 케 어기술 관리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는 직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의 을 연 2회 제공하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원을 대한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복지 실무역량 강화 과정을

터 장애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의 사·커 등이 팀을 이루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서비스', 장애인에게 보조기 에 대 한 신 제공하는 '보조기 콜센터', 재활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보조기 에 는 '장애인 보조기 교육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음성 인식기·확대기·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의 보조기를 교부하고 있으며, 건강보 험을 해 77가지의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2009년 기준, 7만 명, 342억 원)(부 록 표42 참조). 그 밖에 정부는 보조기 및 보조공학에 대한 홍보, 연, 국제협 력 축진을 위하여 국립재활원 에 재활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131. 대한민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1993.12.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1997.12.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의거, 고용영역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 등에 관한 법

를」은 사용자가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1항)(부록 표62 참조). 그러나 「최저임금법」(제
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규정이 있다. 한편,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
장애인 기준) 대한민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36.0
국민 고용률은 60.0%, 실업률은 3.2%)(부록 표6

132.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1990년
에 의거 도입)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
포함한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부부문과 공공기관은 총 근로자의 3%, 민간부
로 고용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미달성하
주는 ‘고용부담금’(1인당 월 56만원)을 납부하
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15~50만원)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년부터 중증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중
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중증
한편, 법정 의무고용률이 2%였던 2009년 12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
였다(부록 표
64 참조).

133.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의 고
만을 선발하는 ‘특별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 신규채용공무
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였을 때는 6% 이상)
하는 제도(‘분모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7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채용제도를
고용된 장애인은 81명이다.

134. 정부는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9년, 장애인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건강도우미, 사서보조원, 우편물 분류원, 동료상담원 등으로 고용한 바 있다. 2009년 현재 장애인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총 4,172명이었으며, 이를 위한 정부예산은 2,984백만 원이었다.

13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직업훈련 기회 제공 시 장애인을 중요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훈련은 ‘직업능력개발원’(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기관) 5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 훈련 서비스 제공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훈련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전체 훈련인원의 70% 이상을 중증장애인에게 할당하고 있다(2009년 기준, 2,434명 참여, 취업률 68.5%). 그 외에도 정부는 40여개의 공공훈련기관 및 20여개의 민간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원직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 재활상담 및 재활스포츠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136.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여 직업상담 및 직업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부록 표3 참조).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제반시설이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이

에 따라 현재 정부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한 일반학교 직업교육 학교는 10개교,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3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해 제정되었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창업자 및 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할 경우 하고(제8조 제2항), 중소기업 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제1항). 또한 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매하도록 장려하고(제9조의2), 이들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부록 표66-67 참조). 참고로,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르면, 취업 장애인의 35.3%가 자영업자이며 54.6%가 임금근로자로 나(표68 참조)(전 국민 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3.5%, 임금근로자는 71%)는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육성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으로, 2010년 현재 102개소가 설립되어 있다(장애인 2,554명, 상시근로인 비중 54%).

13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알선과 교육훈련을 ~~해~~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 중인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고용알선, 온라인 ~~인~~ 직 등이 있으며, 그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 전문포털 사이트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를 운영하고 있다.

1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6.12.제정)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제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41.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3,370천원)의 54%에 불과하며(부록 표69 참조), 장애인의 절대 빈곤율은 20.38%로, 비장애인 7.65%에 비해 높았다(부록 표70 참조).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법」에 의거, 중증의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제도는 그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의 하위 56%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하위 70%)에 비해 다소 협소하고, 급여 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21만원)을 보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의 5~8% 수준). 이에 정부는 향후 그 지원 대상을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급여 수준도 부가급여액은 추가지출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1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부록 표71 참조), 18세 미만의 저소득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부록 표16 참조).

142.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임대차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이에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범위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2004년 840호에서 2009년 1,996호로 증가했다.

143.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금 공제 및 이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가 있고, 또한 재산가액의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 감면되고, 유선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시청각 장애인 텔레비전 수신료, 초고속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장애인에게 할인된다.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144.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 「공직선거법」(1994.3.제정, 2010. 3. 개정)은 원칙적으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금지선고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참고로 2010년 현재,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 299명 중 7명, 지방의회 의원 3,868명 중 65명이 장애인 의원이다.

145. 「공직선거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설 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제38조 제3항 제2호, 제149조의2). 또한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행접수물

“
146. 장애인에게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투표안내도(투표소당 2~4인)를 배치하여 장애인에게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안내문 및 음성투표안내CD를 보급하여 투표방법·절차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율은 58%였다(부록 표72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7월에 실시된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74.0%의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46.0%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다.

147. 장애인이 선거에 당선되어 각급 정부 기관에서 공직을 수행할 경우는 물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어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제11조).

148. 정부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를 국고로 련을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
문화의 다양성을 파견
문화의 다양성 일부 문화
문화의 다양성 청각장애
문화의 다양성 신기를 이용해
문화의 다양성 (부록 표74 및 표

가
의
환

는 문화
사를 파견
일부 문화
도 청각장애
신기를 이용해
(부록 표74 및 표

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체육 동호회, 장애청소년체육
장애학생을 위한 전국체육대회
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여성 교실과 같은 생활체육
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양성
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

153. 「저작
저작자의 권리
복제·배포할 수
적으로 하지 않
문저작물을 녹음
는 전송할 수
권을 일부 완화
방식으로 점자
쇄물을 음성으로
다.(제14조 제2

154. 대한
를」을 일부 개
는 장애인이 비
제공하기 위하
대해서는 새로
제공하도록 의
도서관지원센터
작·배포하는
서관은 도서관
하도록 요청할
한다.(「도서관

통계와 자료 수집

155. 정부
2.1.제정) 제2조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
관련 정부부처들은 수집된
권리를 증진하
수립·시행·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년 주기로 장
등급별·연령별·시도별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생활시설
수 및 입소 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장애인 재활보조기
등을 '보건복지
계연보'에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추진 실적 및 개선

방안

실태

일반

특

출산

를

부처

권리

의

있다.

인에
등 장애
직업훈련
장애인의
(18조 제2항)

의거, 수집된
를
부처
권리
의
있다.

158. 정부는 「~~4~~계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 등에 의거, 계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관련 조항을 위반할 시 징역,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제39조, 제41조).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 국제 규범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이 법 조항에 따라 장애인도 개인 정보를 보호 받는다.

159. 정부부처 또는 정부부처를 대행하여 자료 수집이나 연를 진행하는 국책 연기관은 연 계획의 수립, 자료 수집 및 연 결과 평가 시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자료 수집이나 연의 주체로 참여시키기도 한다. 그 예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 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 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고, 연 자문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에도 역시 그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제32조 국제협력

160. 정부는 지역 차원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에스캡”(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의 일원으로서 자국의 모범적인 장애인 관련 입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에스캡 회원국 및 준회원국과 공유·교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the Fin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2003-2012)”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개최국으로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을 강²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에스캡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2010년에 60,000불을 에스캡 사무국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이를 약 200,000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6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한 “아·태 지역의 장애인 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보편적 이행을 위한 역 국가들의 노력을 공유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에 추진한 아태 지역 국가인권기² 직원 초청 연수사업(2009 Annual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Officers of NIs)에서도 몽골,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태국,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을 초청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²제 등에 관한 법률」과 그에 근거한 장애 차별의 조사와 ²제를 포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소개한 바 있다.

162. 정부는 장애인단체의 국제 역량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10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지역 시각장애인 안마세미나, 2011년 제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그리고 2012년에 개최될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대회·아태장애포럼(Asia Pacific Disability Forum) 컨퍼런스·세계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 장애인대회 등의 민간차원의 국제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163. 정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노동기²(ILO) 아태지역 사무소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등 11개국 78명의 아태지역 장애인 고용 관련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태국, 몽골,

재결연을 체결하고, 한국의
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공
활센터에 장애인 보조공학기
하였다. 정부와 ILO 아태사무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여성
매년 초청 연수 대상자의 약 10%

협력단(KOICA)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참전용사 및 대인지뢰 피해자 등 재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콜롬
(2009년~2012년), 베트남의 빈곤층 장애인에게 재
합을 지원한 사업(2009년), 중국 쓰촨성 재활센터에
(2010년), 레바논의 장애인 재활센터에 정보기술 기자재를
그것이다. 2010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KOICA의 국
4.28백만 불 규모이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신규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은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
on Aid Effectiveness, 2005), 아크라행동계획(Acra Agenda
범분야 주제(cross-cutting issues) 주류화를 포함한 개발원조위
조규범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중 장애 주류화 전략으로
이나, 해당 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에 장애인이 참여한 사업 등은 아
정부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장애인을 참여하는
적극 검토하고, 환경, 성평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범분야(cross-sector)
합계획에 장애 주류화 전략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66.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11곳이다(부록 표79 참조). 이 중 정부는 정부 직제에 의거하여, 협약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부서(focal point)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지정하였다. 장애인정책국은 입법 및 제도, 정책 등을 분석하여 이 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장애인정책국은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총괄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monitor)하고 있다.

167. 정부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조정, 그리고 그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의 비상설 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중요한 특수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이 보고서 초안을 심의하였다.

168.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제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업무를 포함한 모든 소관 업무를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함으로써(제3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소위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와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고(제19조 제7호), 국제인권협약의 이행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제21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그 근거를 두거나 이를 이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입법·제도·정책·관행을 조사하고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된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ㄹ 제하며, 필요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 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의 국 이행을 증진·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부록 표 80 참조).

169. 정부는 장애인 관련 입법 및 정책 등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ㄹ 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부 록

제1~2조 목적 및 정의

표 1.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유형 및 등급

-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장애유형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지체장애인	○	○	○	○	○	○
2. 뇌병변장애인	○	○	○	○	○	○
3. 시각장애인	○	○	○	○	○	○
4. 청각장애인		○	○	○	○	○
5. 언어장애인			○	○		
6. 지적장애인	○	○	○			
7. 자폐성장애인	○	○	○			
8. 정신장애인	○	○	○			
9. 신장장애인		○			○	
10. 심장장애인	○	○	○		○	
11. 호흡기장애인	○	○	○		○	
12. 간장애인	○	○	○		○	
13. 안면장애인		○	○	○		
14. 장루 및 요루장애인		○	○	○	○	
15. 간질장애인		○	○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②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③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표 2. 장애유형 및 등급별 등록 현황 (2009. 기준)

(단위: 명, %)

장애유형	1급			2급			3급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간	647	183	830	871	231	1,102	1,119	306	1,425
간질	136	97	233	581	463	1,044	1,779	1,448	3,227
뇌병변	35,466	32,974	68,440	37,953	31,411	69,364	37,595	24,643	62,238
시각	17,186	16,473	33,659	4,441	4,400	8,841	7,359	6,833	14,192
신장	1,881	1,068	2,949	22,687	18,350	41,037	20	11	31
심장	371	204	575	1,372	919	2,291	7,480	4,538	12,018
안면	52	40	92	230	189	419	522	356	878
언어	50	20	70	974	557	1,531	5,197	1,773	6,970
자폐성	5,597	1,211	6,808	4,071	742	4,813	2,041	270	2,311
장루,요루	21	8	29	152	78	230	864	369	1,233
정신	5,483	4,253	9,736	23,091	18,883	41,974	22,051	21,012	43,063
지적	27,756	18,570	46,326	34,211	23,316	57,527	32,204	18,892	51,096
지체	27,342	14,038	41,380	53,301	30,339	83,640	113,811	57,094	170,905
청각	3,600	2,832	6,432	26,346	22,682	49,028	26,076	19,977	46,053
호흡기	2,167	774	2,941	3,328	910	4,238	6,741	1,940	8,681
합계	127,755	92,745	220,500	213,609	153,470	367,079	264,859	159,462	424,321

<계속>

장애유형	4급			5급			6급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간	77	17	94	3,097	1,182	4,279	0	0	0	7,730
간질	2,921	2,334	5,255	0	0	0	1	0	1	9,760
뇌병변	15,077	8,459	23,536	11,357	5,745	17,102	7,806	3,332	11,138	251,818
시각	6,465	5,943	12,408	11,383	8,759	20,142	98,771	53,224	151,995	241,237
신장	188	121	309	5,724	3,980	9,704	0	0	0	54,030
심장	11	2	13	171	59	230	0	0	0	15,127
안면	644	470	1,114	0	0	0	1	1	2	2,505
언어	5,583	2,090	7,673	2	1	3	2	0	2	16,249
자폐성	1	0	1	0	0	0	0	0	0	13,933
장루,요루	3,238	1,755	4,993	3,453	2,499	5,952	0	0	0	12,437
정신	2	1	3	0	0	0	0	0	0	94,776
지적	1	2	3	0	1	1	0	0	0	154,953
지체	120,835	133,452	254,287	200,705	185,087	385,792	241,676	115,651	357,327	1,293,331
청각	28,395	22,589	50,984	30,148	25,915	56,063	21,938	15,303	37,241	245,801
호흡기	0	0	0	0	0	0	0	0	0	15,860
합계	183,438	177,235	360,673	266,040	233,228	499,268	370,195	187,511	557,706	2,429,547

*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 장애인인구(2,429,547)/전체인구(49,773,145)=4.88%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3.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현황 (2009. 기준)

○ 생활시설

구 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시설 수	397	43	14	11	
생활인원	23,243	2,705	918	403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
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출처: 보건복지부(2010)

○ 직업재활시설

구 분	계	근로시설	보호작업장	장애인시설
시설 수	386	33	250	13
근로인원	11,048	1,516	6,574	425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42조 제1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을 돕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을 포함한다. 장애 정도가 중한 정도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근로사업장 등으로 구분된다.

** 출처: 보건복지부(2010)

○ 지역사회재활시설

구 분	계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기타
시설 수	1,563	185	18	1,333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는 시설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문화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 기타: 주간, 단기보호시설(486), 그룹홈(531), 심부름센터(154), 수화역센터(162), 점자도서관 및 출판시설(28)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2,938건은 동법 시행 전인 6년여 동안의 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사건 총 630건의 4.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아래 표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월 평균 진정건수는 8.9건, 2008년 4월 11일부터 2010년 9월까지 월 평균 진정건수는 87.5건으로 나타나 월 평균 진정건수가 10배 가량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장애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

표 4. ‘연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1.11.~2010.9.)

(단위: 건)

구 분	연 도 (년)	합계	2001 (11.~ 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합계	장차법 시행 이후		
												시행이후 (4.11~ 12월)	2009	2010.9
장애 진정 건수	연도별	630	13	20	20	54	121	113	239	50	2,938	645	745	1,548
	월평균	8.9	6.5	1.7	1.7	4.5	10.1	9.4	19.9	17.7	87.5	71.6	62.1	172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표 5.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4.~2010.9.)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재화 용역	보험· 금융	시설물	이동 교통	정보 접근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기타			
2008년 (4~12월)	건수	645	46	58	55	58	95	125	63	14	-	50	81	-
	비율	100	7.1	9.0	8.5	9.0	14.7	19.4	9.8	2.2	0	7.8	12.6	0
2009년	건수	745	65	49	154	91	94	51	12	13	2	43	114	56
	비율	100	8.7	6.5	20.6	12.0	12.6	6.8	1.6	1.7	0.2	5.7	19.2	7.5
2010년 (1~9월)	건수	1,548	67	47	269	48	251	87	505	36	6	34	135	63
	비율	100	4.3	3.0	17.3	3.1	16.2	5.6	32.6	2.3	0.3	2.1	8.7	4.0
전체	계	2,938	178	154	478	197	440	263	580	63	8	127	330	119
	비율	100	6.0	5.2	16.2	6.7	15.0	5.5	19.7	2.1	0.3	4.3	11.2	4.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표 6.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2008.4.~2010.9.)

(단위: 건, %)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자폐	정신	기타
2008년 (4~12월)	건수	645	314	110	75	59	53	24	10
	비율	100	48.7	17.1	11.6	9.1	8.2	3.7	1.6
2009년	건수	745	304	92	69	46	72	46	116
	비율	100	40.8	12.3	9.3	6.2	9.7	6.2	15.5
2010년 (1~9월)	건수	1,548	461	411	118	260	163	46	81
	비율	100	29.7	26.5	7.5	16.7	10.5	3.0	5.2
전체	계	2,938	1,079	613	262	365	288	124	207
	비율	100	36.7	20.8	8.9	12.4	9.1	4.2	7.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표 7.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08.4.~2010.9.)

(단위 : 건)

연도	계	인용		기각 (조사 중 해결)	각하 (조사 중 해결)	조사중지	이송
		권고 등 (수용건수)	합의종결				
2008.4.11.~	502	21(19)	12	183(78)	283(65)	3	-
2009	711	11(6)	48	300(108)	343(59)	4	5
2010.1.1.~ 2010.9.30.	822	21(2)	42	188	552(375)	5	14
전체	2,035	53(27)	102	671(186)	1,178(499)	12	19

* 합의종결 :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 중 해결 :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진정의 원인이 원만히 해결되어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하여 각하 처리한 경우와 권리 2 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기각 처리한 경우를 모두 조사 중 해결로 2 분함.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제6조 장애여성

표 8.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09. 기준)

(단위: 천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인 원(명)	2,429	1,426	1,003
2 성비(%)	100.0	58.7	41.3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9. 성

• 장애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남성	632	41	718	48.4	6.1	45.4
여성	223	19	743	24.6	7.8	22.7
계	855	60	1,461	38.5	6.6	36.0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전체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남성	14,635	14,116	519	5,185	73.8	3.5	71.2
여성	10,464	10,190	274	10,250	50.5	2.6	49.2
계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10. 성별 취업장애인의 근로 상황

(단위: 개월, 시간, 만원)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평균 근속기간(개월)	108.5	124.2	112.7
주당 평균 취업시간(시간)	46.8	36.8	44.1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만원)	156.4	75.5	134.2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11. 성별 장애인 교육 수준

(단위 : %)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학	7.8	28.9	16.5
초등학교	29.2	38.4	33.0
중학교	18.8	11.8	15.9
고등학교	30.1	16.4	24.4
대학이상	14.1	4.6	10.2
계	100.0	100.0	100.0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표 12. 여성가족부 소관 장애여성 지원 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실적(2009년)
	2009년	2010년	
계	1,280	1,697	
장애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952	1,176	65개 기관 실시, 46,566(연인원) 참가
재가 장애여성 e-희망날개교육프로그램 (학습용 PC제공, 인터넷 활용법 교육 등)	98	90	200명 지원
장애여성 리더 DB 구축	27	-	1,859명 구축
장애여성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지원	203	371	부록 표13 참조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매뉴얼 개발	-	30	-
장애여성 유형별 적합 직종 개발·보급	-	30	-

* 출처: 여성가족부(2010)

표 13. 장애여성 전문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현황 (2009. 기준)

(단위 : 개소, 건, 명)

구분	시설 종류	설치 수	상담건수/입소인원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17개소	22,333건
	보호시설	3개소	312명
장애여성 가정폭력	상담소	3개소	미집계
	보호시설	1개소	미집계

* 출처: 여성가족부(2010)

제7조 장애아동

표 14. 성별·연령별·등급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09. 기준)

(단위: 명)

나이	1급			2급			3급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0-10세	8,087	4,852	12,939	5,652	3,004	8,656	5,801	2,952	8,753
11-20세	15,095	7,645	22,740	14,046	7,906	21,952	10,293	5,121	15,414
21-30세	12,229	7,160	19,389	15,359	9,898	25,257	13,856	7,051	20,907
31-40세	14,531	8,894	23,425	23,609	15,469	39,078	27,452	13,774	41,226
41-50세	20,363	11,293	31,656	39,956	24,709	64,665	52,889	25,525	78,414
51-60세	21,050	12,185	33,235	41,590	25,790	67,380	56,848	29,096	85,944
61-70세	19,710	15,407	35,117	40,112	29,530	69,642	54,518	33,703	88,221
71-80세	13,124	16,972	30,096	26,822	27,339	54,161	35,028	31,064	66,092
81-90세	3,363	7,520	10,883	6,107	9,032	15,139	7,733	10,131	17,864
91세 이상	203	817	1,020	356	793	1,149	441	1,045	1,486
합계	127,755	92,745	220,500	213,609	153,470	367,079	264,859	159,462	424,321

나이	4급			5급			6급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0-10세	977	499	1,476	644	512	1,156	795	546	1,341	34,321
11-20세	1,436	851	2,287	1,730	1,091	2,821	2,901	1,358	4,259	69,473
21-30세	5,091	1,953	7,044	8,274	2,702	10,976	22,093	4,707	26,800	110,373
31-40세	15,222	5,479	20,701	25,880	7,906	33,786	53,604	12,087	65,691	223,907
41-50세	37,317	14,037	51,354	55,171	23,177	78,348	88,184	28,640	116,824	421,261
51-60세	42,929	24,453	67,382	64,452	46,389	110,841	87,662	46,470	134,132	498,914
61-70세	42,649	54,776	97,425	62,605	71,887	134,492	73,013	47,132	120,145	550,065
71-80세	29,884	60,370	90,254	38,413	60,498	98,911	35,680	32,287	67,967	407,481
81-90세	7,459	13,643	21,102	8,361	17,441	25,802	5,959	8,558	14,517	105,307
91세 이상	474	1,174	1,648	510	1,625	2,135	304	703	1,007	8,445
합계	18,3438	17,7235	360,673	26,6040	23,3228	49,9268	370,195	18,2488	552,683	2,429,547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15. 18세 미만 장애아동 현황 (2009. 기준)

(단위: 명, %)

장애유형	계	지적	뇌병변	자폐성	청각	시각	언어	지체
인원(명)	81,687	36,356	13,309	10,687	5,233	3,751	1,615	8,030
비율(%)	100	44.3	16.3	13.1	6.4	4.6	2.0	9.8

장애유형	심장	정신	간질	신장	간	안면	장(요)루	호흡기
인원(명)	1,031	541	264	291	308	121	85	65
비율(%)	1.3	0.7	0.3	0.4	0.4	0.1	0.1	0.1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16.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10년 6월
시설 수		22,630
인원 수		18,243
지	급자 중증 장애인	월20만원
	중증 장애인	월15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월10만원

* 중증 : 지적 또는 자폐성 중증장애인 /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출처: 보건복지부

표 17.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인원 수	12,348	15,083
예산액	31,281	49,040

* 출처: 보건복지부

표 18. 장애인복지시설 및 통합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수	160	168
	장애아동 수	6,068	6,206
	정부 운영지원 예산	20,190	21,195
통합 보육시설	시설 수	756	806
	장애아동 수	3,518	3,469
	정부 운영지원 예산	9,574	9,747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19.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현황

(단위: 명, 원)

지원 대상	지원서비스	지원규모	1인당 지원 금액	예산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37천명	최대 월 22만원	481억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제8조 인식제고

표 20.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식

표 22. 보건의료분야 홍보활동 실적(2009. 기준, 예산: 5.45억 원)

• 광고홍보

구분	2009년	2010년 6월
TV 캠페인	1편 복지 TV, 2개월	3편 TV 자막 569회, 송출 116회
라디오 캠페인	-	3편 177회
신문/잡지	16회	24회
온라인	인터넷 배너1편,6개월/ 온라인 퀴즈 이벤트 (34,526명 참여)/ UCC 제작 및 플래쉬 몹 행사 (2개월)	인터넷 배너 5편, 각2주~6개월 / 온라인퀴즈 이벤트,2주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지하철 1편,1~2개월/ 전광판 1편,1개월	전광판 1편, 1개월
광고협찬	1회 (광주비엔날레)	1회(SBS 라디오)

• 홍보물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시청	3종	-	3종
팸플릿	플릿 1종 10만부	지역간행물 1종	6종 87만부
포스터	1종 10만부	-	2종 47,000만부
책자	3종 9만부	2종 27,000부	2종 11,600부
DM	-	-	중증장애인 대상 정책 안 물 배송(5회, 100만 명)

표 23. 장애인차별정도 인식 (2009. 기준)

(단위 : 명, %)

	장애유무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매우 편하다	79 (16.8%)	67 (13.8%)	146 (15.3%)
많음 편하다	214 (45.5%)	258 (53.1%)	472 (49.4%)
보통이다	146 (31.3%)	130 (26.7%)	276 (28.9%)
없음 편이다	20 (4.3%)	20 (4.1%)	40 (4.2%)
거의 없다	11 (2.3%)	11 (2.3%)	22 (2.3%)
전 체	470 (100.0%)	486 (100.0%)	95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표 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지도 (2009. 기준)

(단위 : 명, %)

	장애유무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알고 있다	167 (33.4%)	186 (37.4%)	354 (35.4%)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겠다	56 (11.2%)	68 (13.6%)	124 (12.4%)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227 (55.4%)	245 (49.0%)	552 (52.2%)
전 체	500 (100.0%)	500 (100.0%)	1000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

제9조 접근성

표 25.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 %)

대상시설별	2003년 조사			2008년 조사				증감
	법정의무 편의시설 수 (a)	실제 설치 수 (b)	설치율 (b/a)	법정의무 편의시설 수 (A)	실제 설치 수 (B)	설치율 (B/A)	적정 설치율	
도로	85,499	185,619	89.0	-	-	-	-	-
공동주택	138,533	91,484	66.0	563,445	468,813	83.2	59.7	17.2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538,453	399,854	74.3	3,160,937	2,422,520	76.6	69.1	2.3
공원	4,652	8,665	59.1	36,410	24,036	66.0	57.9	6.9
계	877,257	665,293	75.8	3,760,792	2,915,369	77.5	62.2	-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26.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가)

연도	추진계획 (가구 수)	추진실적 (가구 수)	세부지원내역 (지원 가구 수, 복합 지원 포함)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8	1,000	1,075	491	111	193	160	590
2009	1,000	1,088	552	94	143	111	435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27. '재화·용역 제공'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단위 : 건, %)

구분	소계	재화·용역	보험·금융	시설물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기타
합계	842	384	128	135	97	48	43	7
공공	425	242	11	55	63	24	28	2
사적	417	142	117	80	34	24	15	5

* 해당연도 총 진정 건수 1,450건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표 28.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2009년	2010년
실 적	5,043	5,706
예 산	1,356	1,721

* 출처: 법무부(2010)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표 29. 정신보건시설 입원 현황 (2008. 기준)

(단위: 명, %)

		총 입원 환자 수	자의입원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입소
2008 총계	전체	72,214(100.0)	9,387(13.0)	50,425(69.8)	11,580(16.0)	822(1.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68,110(100.0)	9,387(13.8)	50,425(74.0)	7,476(11.0)	822(1.2)
정신의료기관 소계		56,260(100.0)	8,894(15.8)	42,615(75.7)	3,929(7.0)	822(1.5)
국립정신병원		2,695(100.0)	723(26.8)	1,236(45.9)	1(0.0)	735(27.3)
공립정신병원		3,165(100.0)	409(12.9)	2,352(74.3)	402(12.7)	2(0.1)

입원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가 가족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입소
71(10.8)	19,305(80.8)	1,997(8.4)	32(0.1)
964(23.1)	3,056(73.2)	119(2.9)	36(0.9)
995(19.1)	11,354(72.6)	1,284(8.2)	10(0.1)
1,232(18.5)	5,312(79.6)	126(1.9)	7(0.1)
493(4.2)	7,810(65.9)	3,547(29.9)	-

보호치료 대상자, 응급입원자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국가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3.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단위 : 건)

가·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기타
10	8	53	31	109	21
1	0	9	0	23	5
9	8	44	31	86	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 (2009.1.1.~2010.11.17.)

(단위 : 건)

	구분	인용									미인용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직권 조사중 종결	기초 조사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과태료 부과
합의 권고	56			56	1	1			49			906	12	381	15	
조정 권고	30			30					14			424	4	176	5	
권고	50			4					2			92	1	51		
고발	88			3					3			56		26		
징계 권고	292			9		1			19			179	7	74	3	
법률 구조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직권 조사중 종결																
기초 조사중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과태료 부과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표 32. 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및 예산 (2010.11. 기준)

(단위 : 건, 개소, 회)

사업내용	실적	예산
· 차별, 인권침해 피해상담	300건	150백만 원
· 법률자문 및 복지상담	200건	
· 장애인인권침해 상담 전국네트워크 구축	10개소	
· 장애인 인권침해 공익 소송지원단 운영 (법률자문)	90건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22개소	
· 장애인 인권예방교육	10회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가이드북 제작	-	

출처: 인권침해예방센터(2010)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

표 3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분	센터 수	예산 지원 내용		
		국고	지자체	미지원
센터 수	158	25	57	76
예산지원액	8,594,265	3,750,000	4,844,265	-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34.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현황 및 예산 (2009.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장애인 수	활동보조인 수	예산(2009년)	예산(2010년)
436개소	27,818명	18,540명	112,396	134,770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35. 도와줄 외부인(활동보조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31.5	43.8	30.0	20.6	20.9	39.2	44.0	49.2	22.0	28.4	24.2	23.8	26.1	15.2	41.2	34.2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5.3	14.6	5.7	3.2	5.8	11.5	19.5	3.5	2.9	1.7	5.8	2.5	5.3	1.3	6.0	7.5
필요없다	63.2	41.5	64.3	76.1	73.3	49.3	36.5	47.3	75.1	70.0	70.0	73.6	68.6	83.5	52.8	5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432,255	185,323	83,641	99,417	9,121	132,688	12,191	63,669	20,828	6,712	8,208	2,082	417	9,959	3,301	1,069,812

* 무료라면 이용하겠다(34.2%)+유료라도 이용하겠다(7.5%)= 이용할 의사가 있다(41.7%)
이를 전국추정수로 계산해 보면 446,111명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표 36.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단위 : %)

구분	2009년(7대 특별시·광역시)			2010년(9개 도)		
	기준적합	기준미달	미설치	기준적합	기준미달	미설치
버스차량	77.2%	8.8%	14.0%	79.2%	12.9%	7.9%
도시철도 및 전철 차량	96.4%	3.6%	0%	-	-	-
철도차량	87.7%	1.6%	10.7%	81.9%	7.8%	10.7%
항공기	83.3%	0%	16.7%	100.0%	0%	0%
여객선	16.9%	11.2%	71.9%	10.4%	12.3%	77.3%
평균	72.3%	5.0%	22.7%	67.9%	8.3%	24.0%

* 2009년 조사 대상은 7대 특별시·광역시(표본조사), 2010년 조사 대상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 임(표본조사)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37.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단위 : %)

구분	2009년((7대 특별시·광역시)			2010년(9개 도)		
	기준 적합	기준 미달	미설치	기준 적합	기준 미달	미설치
버스터미널	77.0%	8.5%	14.5%	47.0%	26.6%	27.4%
버스정류장	25.5%	13.3%	61.2%	26.6%	23.0%	50.2%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88.8%	4.0%	7.2%	82.4%	12.5%	5.0%
철도역사	85.9%	4.8%	9.3%	69.9%	18.0%	12.1%
공항여객터미널	78.8%	8.3%	12.9%	66.8%	19.2%	14.0%
여객선터미널	84.5%	3.8%	11.7%	56.3%	27.5%	16.3%
평균	73.4%	7.1%	19.5%	58.2%	21.1%	20.8%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38. 보행환경(여객시설주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단위 : %)

구분	2009년(7대 특별시·광역시)			2010년(9개 도)		
	기준 적합	기준 미달	미설치	기준 적합	기준 미달	미설치
평균	51.7%	18.9%	29.4%	36.7%	26.2%	37.1%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39. 9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 %)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장애인화장실	평균
버스터미널	75.0	25.0	67.3	55.8
도시철도역사	93.8	68.8	100.0	87.5
철도역사	89.2	54.1	85.7	76.3
항공터미널	83.3	100.0	88.9	90.7
여객선터미널	66.7	66.7	86.7	73.4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40.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예산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계		2009년	2010년
계	1,016		600	416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도시철도	예산	320	320
		실적	· 42역사 88대 설치 (E/L 46대, E/S 42대)	· 53역사 138대 설치계획 (E/L 85대, E/S 53대)
	수도권전철	예산	280	96
		실적	· 6역사 18대 설치 (E/L 17대, E/S 1대) · 16역사 120대 설치공사 중 (E/L 20대, E/S 100대)	· 11역사 94대 설치 (E/L 16대, E/S 78대) · 9역사 62대 설치공사 중 (E/L 12대, E/S 50대)

* 출처: 국토해양부(2010)

표 41. 부가가치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품목

1	의수족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	휠체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3	보청기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5	성인용 보행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7	청각장애인용 골도 전화기	17	인공후두
8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18	장애인용 기저귀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함)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42. 장애인 보조기구 공적급여 현황 (2009. 기준)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 가 보훈처	행정 안전부
과	보험 급여과	요양보험 제도과	기초의료 보장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산 재	장애인 고용과	보훈 의료과	정보 문화과
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 기 ² 교부	산재보험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 ² 지급	정보격차해 소지원
지원 기관	건보공단	건보공단	시·군· ²	시·군· ²	근로복지 공 단	장애인 공단	보훈병원	정보화 진흥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및 차상위층	산재보험 가 입 자	장애인고용 사업주	국가유공 상이자	등록 장애인
품목수 (개수)	77	16	77	12	93	159	41	42
지원 규모	342억	673억	161억	9억	56억	70억	48억	30억

* 출처: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2010)

표 43.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품목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자세보조용² · 진동시계 · 보행보조차 · 식사보조기² · 기립보조기² · 음성증폭기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²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45. 장

(K	

* 출처: 방송

표 46. 방송매체 이용률 현황

구분	자막방송	
2009년	7,373	
2010년	7,503	
2000년~2010년(총계)	44,966	66,200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0)

표 47.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 제

표준종류		제정년도
국가표준 (1종)	금융거래정보교환용 전자서명용 전자인식장치 규격	2007년 10월 19일
단체표준 (9종)	한국형 신용정보시스템용 전자인식장치 규격	2006년 12월 27일
	디지털 영상정보의 압축 방법 및 압축 파일 형식	2006년 12월 27일
	소프트웨어용 전자인식장치 규격	2006년 12월 27일
	한국형 사용자 인증용 전자인식장치 지침 1.0	2006년 12월 27일
	전자인식장치용 암호 알고리즘 1.0	2007년 12월 26일
	휴대전화용 사용자 인증용 전자인식장치 지침 1.0	2007년 12월 26일
	시각장애인 인쇄물 출력용 2차원 바코드 규격	2008년 8월 28일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2008년 8월 28일
	한국형 개인용 컴퓨터용 전자인식장치 규격	2008년 8월 28일
	한국형 개인용 컴퓨터용 전자인식장치 지침	2008년 8월 28일

* 출처: 행정안전부(2010)

제23조 가정과

표 48.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현황

추진사업	계	2009년	201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돌봄서비스 - 휴식지원프로그램	30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제24조

표 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 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사

NO.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1	시각장애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력 0.05 이하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광학기기·학습매체 등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사람
2	청각장애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적 자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미미한 사람
3	정신지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결함으로 학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4	지체장애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학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결함으로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불안감, 공포감 등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대해 심리적·신체적인 과잉반응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6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NO.	특	
7	의사소통장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또는 표현에 장애가 있다. 나. 조음능력이 정상적이지 않다. 다. 말 유창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다.
8	학습장애	개인의 적 요인(지능, 동기, 말하기, 주의집중(注意),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능력 등 학업 성취 영역에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4회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토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표 50. 장애학생 인원 및 학교 유형

(단위: 개소, 명)

학교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대학교
학교/학급/센터 수 (개소)	150	7,792	6,775	187	173
학생 수 (명)	23,776	42,021	13,746	168	5,71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단위: 명)

구 분		특수교육대상학생	전체학생	특수교육대학학생/ 전체학생(비율)
장애 학생수	계	79,711	7,774,835	1.02%
	장애영아	290	-	-
	유치원	3,225	538,587	0.59%
	초등학교	35,294	3,299,094	1.06%
	중학교	19,375	1,974,798	0.98%
	고등학교	19,111	1,962,356	0.97%
	전공과	2,416	-	-

* 전체학생= 장애/비장애학생 포함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및 한국교육개발원(2010)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51.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아동 수 (2009.기준)

(단위: 명)

구분	장애 영아 및 유아 수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특수학교	916	871	341	9	7	2	42	29	13	71	41	30	159	95	64	195	127	68	440	276	164
특수학급	815	815	238	-	-	-	-	-	-	-	-	-	78	58	20	238	163	75	499	356	143
일반학급	1,616	1,616	593	-	-	-	-	-	-	-	-	-	168	110	58	466	263	183	982	630	352
특수교육 지원센터	168	106	62	3	3	-	49	29	20	116	74	42	-	-	-	-	-	-	-	-	-
계	3,515	3,408	1,234	12	10	2	91	58	33	187	115	72	405	263	142	899	573	326	1,921	1,262	659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52. 교육기관 정당한 편의제공 현황 및 예산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계	2009년	2010년
계	1,524	761	763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1,300	650	650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215	106	109
일반교사용 지도자료 제공	9	5	4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53.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학교유형	특수학급 설치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편의시설 설치율	76.9%	78.6%	51.0%	93.8%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54. 순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학 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 · 파견	403	434	10	-	847	70	333	230	214	847	198	203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534	1,137	50	625	2,346	44	1,320	599	383	2,346	479	546
특수교육 지원센터	295	157	4	4,434	4,890	537	2,398	985	970	4,890	-	658
계	1,232	1,728	64	5,059	8,083	651	4,051	1,814	1,567	8,083	677	1407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5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 및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2009년	2010년	총 계
지 원 액	2,283	2,800	8,416
지원인원	1,643	2,000이상	8,54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56.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설립별)		대학구분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현황			
		2년제	4년제	설치 대학 수	미설치 대학 수	설치 대학 수	미설치 대학 수		
							유사조직 형태		유사조직도 전혀 없음
							지원 부서 설치	전담 직원 배치	
국립	재학 장애학생 10명 미만	-	5	3	2	1	1	4	-
	재학 장애학생 10명 이상	-	19	15	4	15	2	1	1
공립	재학 장애학생 10명 미만	4	3	5	2	2	1	2	3
	재학 장애학생 10명 이상	-	-	-	-	-	-	-	-
사립	재학 장애학생 10명 미만	60	64	37	87	17	28	34	79
	재학 장애학생 10명 이상	31	56	50	37	37	20	16	28
합계	재학 장애학생 10명 미만	64	72	45	91	20	30	40	82
	재학 장애학생 10명 이상	31	75	65	41	52	22	17	29

* 조사대상 및 시기 : 전국 242개 대학(2010.1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57. 시도 교육청별 장애 학생 수 및 교원 수

(단위 :개, 명, %)

전국 시도 수	장애학생 수	확보 교원 수	실제 필요 교원 수	법정 정원준수율
16개	79,711명	15,244명	79,711/4=19,928명	15,244/19,928x100=76.5%

* 실제 필요 교원 수: 학생 4명 당 1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제25조 건강

표 58.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관련 정부 예산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계	2009년	2010년
의료재활센터 건립	235	110	125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5.7	14.1	11.6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5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주거보장	15.4	6.6	12.4
장애예방	3.6	4.3	5.1
보육·교육보장	3.5	4.1	5.0
의료보장	30.1	28.9	15.6
이동권보장	3.1	3.5	6.2
고용보장	8.6	12.5	9.8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3.8	6.1
소득보장	21.9	25.5	21.4
장애인 인권보장	5.7	6.5	9.3
장애인 인식개선	4.3	4.0	8.5
없음	1.8	0.0	0.2
기타	0.7	0.3	0.4
계	100.0	100.0	100.0
전국 추정 수	2,137,226	2,074,880	1,970,848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표 6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기관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원, 개소)

구 분	2006년~2008년	2009년~201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927백만 원	947백만 원
거점보건소 개소수	45개소	45개소
개소당 지원액	4,120만 원	4,208만 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61. 보건소 관리 재가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6월
보건소 관리 장애인	27,533	25,253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제27조 노동과 고용

표 62. 고용 관련 장애차별 진정 건수 (2009.1.1.~2010.11.17.)

(단위 : 건)

구분	소계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배치	승진	직무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계	121	43	22	13	4	4	26	2	7
공공	38	16	0	10	3	1	4	1	3
사적	83	27	22	3	1	3	22	1	4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표 63. 연령별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 률	취 업 률	실 업 률	고 용 률
	인구 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15~29세	130,564	5.5	43,115	37,529	5,586	87,449	33.0	87.0	13.0	28.7
30~39세	196,143	8.3	109,952	101,422	8,530	86,191	56.1	92.2	7.8	51.7
40~49세	372,037	15.7	220,313	200,721	19,592	151,724	59.2	91.1	8.9	54.0
50~59세	507,728	21.4	244,607	229,220	15,387	263,121	48.2	93.7	6.3	45.1

구 분	15세 이상 인구 수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 륜	취 업 륜	실 업 륜	고 용 륜
	총인구	취업자	실업자						
60세 이상	1,169,000	1,169,000	286,266	10,964	872,730	25.4	96.3	3.7	24.5
장애 인구	2,376,000	2,376,000	855,158	60,059	1,461,214	38.5	93.4	6.6	36.0
15~29세	9,720,000	9,720,000	4,027,000	274,000	5,418,000	44.3	93.6	6.4	41.4
30~39세	8,112,000	8,112,000	5,858,000	210,000	2,044,000	74.8	96.5	3.5	72.2
40~49세	8,412,000	8,412,000	6,609,000	150,000	1,657,000	80.3	97.8	2.2	78.5
50~59세	6,712,000	6,712,000	4,867,000	102,000	1,742,000	74.0	97.9	2.0	72.5
60세 이상	7,572,000	7,572,000	2,944,000	58,000	4,572,000	39.6	98.1	1.9	38.9
전체 인구	40,538,000	40,538,000	24,306,000	793,000	15,434,000	61.9	96.8	3.2	60.0

* 출처 :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5. 기준)」, 장애 인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 64.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2009. 기준/ 당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08년 대비
계	22,209	6,091,555	120,277	114,053	1.87	0.14 ↑
정부부문	81	822,749	24,723	16,232	1.97	0.21 ↑
공공기관	250	292,086	5,723	6,156	2.11	0.06 ↑
민간기업	21,878	4,976,720	89,831	91,665	1.84	0.14 ↑

* 출처: 고용노동부(2010)

표 65.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단위 : 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100%)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70%)	210,000	280,000		
만 5년 초과(50%)	150,000	200,000		

* 출처: 고용노동부(2010)

표 66.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예산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장애인고용지원사업	대상 사업체수 64	58
	예산 집행액 9,639	7,935
장애인고용촉진사업	대상 사업체수 192	138
	예산 집행액 1,419	1,268

* 출처: 고용노동부

표 67.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예산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보조공학	지원사업장(개소) 979	1,288
	지원장애인(명) 4,925	5,810
	예산 집행액(백만원) 7,439	8,799
고용관리비용(수화기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지원	지원사업장(개소) 859	1,002
	지원장애인(명) 973	1,125
	예산 집행액 (백만원) 2,896	2,855

* 출처: 고용노동부(2010)

표 68. 장애인 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종사상 지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수

• 장애인 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비율	신체내부		감각		정신적	신체 내부
				지체	지체 외	시각	시각 외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29,482	26.8	26.9	12.5	28.5	24.0	33.0	31.1
	임시근로자	144,388	16.9	16.1	27.7	17.2	18.7	19.4	12.6
	일용근로자	93,046	10.9	9.0	18.0	15.4	11.5	19.6	12.5
	소계	466,916	54.6	52.1	58.2	61.0	54.2	72.0	56.2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1,878	7.2	8.6	5.3	3.6	4.8	0.5	1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40,477	28.1	29.9	19.8	28.4	28.0	12.3	22.1
	무급가족종사자	85,886	10.0	9.4	16.8	7.0	13.0	15.3	11.7
	소계	388,241	45.4	47.9	41.8	39.0	45.8	28.0	43.8
전 체		855,158	100.0	100.0 (585,099)	100.0 (25,063)	100.0 (94,564)	100.0 (81,286)	100.0 (43,113)	100.0 (26,032)

* 지체 외 신체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의미함

**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수

(단위: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장 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 보호작업장	1,051	546	0	0	0	4,342	139	4,395	0	0	0	0	0	0	33	10,506
장애인 근로사업장	0	0	0	162	0	1,496	0	685	0	0	0	0	0	0	0	2,343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표 69.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

(단위: %, 명,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0만원 미만	10.8	12.3	15.1	11.8	12.9	12.9	5.9	29.2	7.0	10.6	14.8	6.2	7.7	10.7	16.5	12.3
50~99만원	24.6	25.4	26.3	25.8	23.5	20.8	4.0	30.5	24.1	24.0	27.5	12.1	24.6	29.3	29.4	24.8
100~149만원	17.4	14.8	13.3	17.2	16.9	15.0	10.9	14.9	15.5	16.6	15.5	14.6	13.6	18.3	20.5	16.3
150~199만원	10.5	10.8	10.2	12.0	14.6	16.5	12.1	9.8	15.8	12.1	12.9	16.5	11.2	12.7	12.1	11.2
200~249만원	11.1	10.4	9.8	10.6	9.5	10.8	10.6	5.3	7.7	9.3	10.5	10.9	10.2	7.2	5.7	10.4
250~299만원	5.8	6.7	6.1	6.8	7.1	6.1	8.9	3.4	5.3	5.6	6.5	3.9	9.7	5.4	4.3	5.9
300~349만원	6.9	6.2	4.9	6.8	6.9	5.5	11.2	1.0	9.2	7.9	5.0	11.3	5.6	4.3	5.3	6.3
350~399만원	5.4	3.2	2.0	2.5	2.2	2.9	5.5	1.1	2.6	5.2	2.9	2.1	7.2	3.1	2.0	4.1
400~499만원	3.8	4.2	6.3	2.8	3.0	5.2	11.1	2.9	6.3	3.3	2.3	8.4	4.8	4.2	2.6	4.1
500만원 이상	3.8	5.9	6.2	3.6	3.6	4.4	19.8	1.8	6.6	5.3	2.3	14.0	5.3	4.7	1.5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7	219,155	219,666	207,383	151,021	139,820	12,329	84,780	48,273	14,571	14,392	6,515	2,186	11,356	8,881	2,136,526
평균	183.0	194.0	182.2	173.7	177.1	189.2	311.2	112.5	207.1	188.5	155.3	275.3	212.3	172.5	141.8	181.9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표 70. 장애인 빈곤율

(단위 : %)

구분	경상 소득			
	절대 빈곤율	상대 빈곤율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전체	8.51%	8.45%	12.87%	17.49%
비장애인	7.65%	7.69%	11.62%	15.91%
장애인	20.38%	21.31%	32.58%	41.03%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10)

표 71. 장애수당 지급금액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9년	2010년 6월
예산액	287,036	179,162
수급자수	486,642	512,842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3만원	

* 중증: 장애등급이 1~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 중증장애인 / 경증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출처: 보건복지부(2010)

제29조 정치 및 공적생활 참여

표 72. 점자 선거 공보물 제작 현황(2010.6.2. 지방선거 기준)

(단위 : 명, %)

	총수	점자 공보물 제작 (인원, 정당수)	비율(%)
후보자	74	45	60.8
각 정당별 비례대표의원 (시·도의원)	19	9	51.3
총 계	93	54	58.0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0), “점자형 선고공보 제공 관련 모니터링 결과(2010.5.20.~6.2.)

표 73. 정부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현황

(단위 : 명, %)

보건의료 기술정책 심의 위원회	중앙보육 정책 위원회	사회보장 심의 위원회	중앙약사 심의 위원회	장애인 정책조정 위원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	편의증진 심의회	중앙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전문 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 심의 위원회
1명 (5%)	1명 (6%)	1명 (6.7%)	2명 (2%)	7명 (54%)	3명 (42.9%)	8명 (57%)	1명 (12.5%)	4명 (21.1%)	3명 (37.5%)

* 출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2010)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표 74.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사업 및 예산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예산		실적 (2009년)
	2009년	2010년	
계	67.1	81.4	
함께누리 지원사업	19	29.5	-
문화바우처 사업	4.8	10	문화바우처 240,309명 배포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	24.5	24.5	- 20개단체 500백만원 지원 - 세계장애인 문화축제 개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9.7	6.5	장애인시설 110개 프로그램 지원, 1,520명 참가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0.8	0.8	국 외 장애인영화제 개최 73편, 관객 수 3,250명(장애인 2,370명)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1.5	1.5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5,790여명 참여
장애인 게임여가문화체험관 ▮ 축	1.5	1.5	게임체험교실 5개실 ▮ 축 (2008-2010년 총 17개실 ▮ 축)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2.0	3.8	-
주요문화시설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3.3	3.3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0)

표 75. 장애인 문

세부추진과제	예산		실적 (2009년)
	2009년	2010년	
○ 문화시설 장애인 편			관, 관
○ 한국영화 한글자막			
○ 점자도서, 녹음도서			서 6,63
제작·보급			포
○ 시각장애인용 원문정			차해소
○ 장애인정보자료실 설			장애인
○ 특수언어 표준화			인 점자학
○ 점자간행물 「손끝으			제정 사업
			회 발행
○ 독서 장애인을 위한			털 음성도
			털 음성도

* 출처: 문화체육관광

표 76. 장애인 생

세부추진과제	실적
장애인생활체육	예산: 43억 원
○ 장애인 생활체육 지	보급(3건) 100개소, 장애유소년 10개소) 실운영 182개소, 전종목육성 75개소) 2개 동호인클럽 지원) (2,109건 상담, 신규체육활동발굴 4,652명) · 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건)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11건) 선 참가(8종목 781명 참가) 최(2,006명 참가)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생활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 품세 프로그램 개발 · 생활체육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개발 - 보급 · 생산교실 보급 · 보급 · 육사진 공모 및 전시
○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 장애인 체육활동 교실 200개소 지원 - 장애인 지역캠프 10개소 지원
○ 생활체육교실 및 전종목 육성	- 생활체육교실운영 182개소 - 전종목육성 75개소

세부추진과제	실적
○ 생활체육	체육동호인단체 322개소 지원 매니저교육
○ 찾아가는	시·도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담당실적 : 2,109, 신규 체육활동 상상담서비스 서비스 실시
○ 생활체육	어울림생활체육대회 35개 지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58개 지원 종목별생활체육축제 21개 지원
○ 전국 국민	- 8개 경기종목, 781명 참가
○ 전국장애인	- 11개 경기종목, 2,006명 참가
○ 생활체육	- 생활체육지도자 101명 배치, 21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10)

제31조 통계와 자료

표 77.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조사 현황

연번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연도/ 조사주기	자료수집방법	주요 내용 (주요 관련 사항)
1	교차·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해양부)	- 전국 165개 지방자치단체	2008년/ 1년 주기	- 국토해양부 에 보고된 자료 분석	- 교차·약자 이동편의 실태 DB -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별 이 의 개선방안 모색
2	전국장애인복지관 편람 (한국장애인복지 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 관협회 회원 장 애인복지관 155 개소	2008년/ 1년 주기	- 협회소속 복 지관이 제출 한 자료 분석	- 장애인복지관 기초·개 자료제공 - 복지관별 범안 및 시설 설 립 현황, 종사자 현황, 예산 현황, 프로그램 현황, 장애 인 서비스이용 현황 등
3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등록장애인 7,000명	2008년/ 3년 주기	- 방문조사	- 우리나라 장애인 및 장 애인의 생활실태 파악 - 장·단기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 구·사회학적·경제적 특 성, 장애유형별 장애특 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실 태 등 파악 - 장애인의 일반특성, 장애특 성, 보건·의료, 일상생활지 원, 보육·교육, 취업 및 직 업생활, 사회 및 여가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거복지서비스, 경제 상태 등 - 장애인 관련시설 일반사항, 시설 장애인 특성 등

연번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연도/ 조사주기	자료수집방법	조사내용 (장애관련 사항)
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만 7세~69세 전 국의 재가 등록 장애인 3,800명	2009년/ 1년 주기	- 면접조사	- 장애인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이용현황 - 장애인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 정보화교육현황, 정보화 역 기능 - 정보격차 지수분석 - 장애인 계층 우선적 정책 대상 집단분석 - 인터넷 이용의 특성 및 문제
5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 설, 공동주택 등 전국 총 107,730 개소	2008년/ 5년 주기	- 방문조사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 각 시설유형별 세분화 된 조사 데이터 확 보, 통계제시 -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 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6	특수교육실태 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요 ² 학 생 조사(취학 특 수교육 요 ² 학생 수 조사 : 919명, 미취학 특수교육 요 ² 학생 수 조 사 : 7,584명) - 특수교육 대상자 실태조사(특수교 육 대상자 실태 조사 : 6,912명, 미취학 특수교육 요 ² 학생 실태 조사 : 1,196명) - 특수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 : 특수 학교 교수 572 명, 특수학급교 사 1,477명 - 특수교육 행·재 정지원 현황 : 특수학교 관리 자 146명, 특수 학급 관리자 1,196명	2008년/ 3년 주기	- 면접조사	- 특수교육 대상자, 기관, 관계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실태파악 -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 계획, 특수교육 교원수 급 계획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연번	조사명	조사연도/조사주기	자료수집	조사내용 (장애관련 사항)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회조사 : 1,000	2008년/ 1년 주기 (부가조사 : 3년 주기)	- 면접조사 - 설문조사	- 장애인고용촉진, 근 로복지,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의 문화 파악 - 경제활동 - 장애인 고용실태와 복지 효과성 평가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복지부)	2009년/ 1년 주기	- 보건복지 자료 및 계정 분석	- 인(장)인정책 - 인력 및 시설, 보건산업,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 경, 재정·경제
9	특수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1년 주기	- 각급 학교 서 시·도 육청을 교육과학기술 술부에 보고 된 현황 자료 분석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 육실태 및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0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대상 등 록 장애인	2009년/ 반기	-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 에 보고된 장 애수당 집행 실적 보고 자 료 분석
11	등록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 등록 장애인	2009년/ 분기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 인 DB에 등 록된 자료 분석
12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의 등록장 애인 1,500명	2007년/ 1회 조사	- 장애인 문화활동 실 태 및 문화활동 수요파 악 -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 및 장·단기 장애인 문 화복지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 제공
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에 접 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	2009년/ 1회 조사	- 국가인권위 에 접수된 장 애인 차별진 정사건 분석

연번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연도/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내용 (장애관련 사항)	
14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 15개 유형의 장 애를 지닌 등록 장애인 5,092명 (제주지역제외)	2009년/ 1년 주기	- 면접조사 - 자료 분석	- 경제활동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 및 개 별특성 - 직업능력 : 직무수행능력, 직업능력 개발 등 - 일자리 : 근로형태별 일자 리 상황 - 고용서비스 : 이용경험, 향 후 이용희망 등 - 일상생활 : 건강, 운동, 수 면, 일상생활도움, 여가, 삶 의 만족도, 고령자의 노후 준비 등 - 소득 : 근로소득, 사적이전 소득 등	
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특수교육 대상 자, 교사, 관리자	매년	- 통계청관련 자료 분석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계 획, 특수교육교원의 수 급계획 등 특수교육 정 책수립을 위한 실태파 악 - 특수교육 수혜자 : 특수교 육수혜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원 인, 특수교육 이용 실태 등	
16	장애인기업실태조 사 (중소기업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 호 규정에 의한 장 애인 기업 32,027 의 장애인 기업	20007년 / 2년 주기	- 면접조사	- 장애인 기업실태를 파 악하여 장애인 기업 지 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	- 일반현황, 인력현황, 대표 자, 재무현황, 창업현황, 경 영활동, 장애인기업정부지 원정책 등
17	장애인생활체육실 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시도 16지 부 등록된 만 10 세 이상 남녀 장 애인	2010년/ 1년 주기	- 면접조사	-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 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 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 료 제공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 장애인 생활체육 미 참여 실태 -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18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 (정부)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교육 청 등 89개 기관 - (민간)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06년/ 1년 주기	- 보고	- 매년 정부 및 민간부문 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 행지도, 민간의 부담금 징수누락 확인, 장애 고용 정책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의 인원, 고용의문 인원, 장 애인 근로자 및 고용률 등

연번	(국립장애인복지관)	조사연도/조사주기	자료수집방법	조사목적	조사내용 (장애관련 사항)
19	기업... (한국...)	2005년/ 2년 주기	- 전화조사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 주의 장애인 고용실태 와 고용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 고용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기본현황, 모집과 채용, 채 용계획 등
20	장애... 및... (한국...)	2002년/ 분기	- 보고	- 장애인 인력시장의 동 향을 파악하여 장애인 인, 직 및 취업동향 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 기본정보, 장애인 직정보, 인사업체 정보, 인정보, 알선 및 취업정 보, 적응지도 정보 등
21	장애...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2010년/ -	- 면접조사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 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파악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별로 속성 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성

* 출처: 통계청, 2010

표 78.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장애인 단체 주요 의견(2010.11.11. 공청회)

이슈	의견
장애인등록제의 문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 자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장애 등급을 매기는 현 행의 장애판정체계는 전적으로 장애인의 의학적 손상 정도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근거한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 및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건수는 2007년 63명에서 2008년 78명 2009년 9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 나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장애여성의 낮은 사회 참여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할당제 및 고용장려금 지급 정책에도 불 구하고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장애남성에 비해 낮은 등, 장애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낮은 실정임.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의 부족	장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급여가 장애인 가 평균소득의 5%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등,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부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의 부진	많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교원의 법정 정원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특수교육센터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침이 없어서 지 역별로 그 운영에서 편차가 발생함.

표 79.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및 기능(2010. 기준)

소관 부처	운영국 (실)	운영부서	기능
보건 복지부	건강 정책국	가족건강과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질병정책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원 및 육성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 밖에 국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장애인차별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	운영국 (실)	운영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의 수립 및 조정
			도에 관한 사항
			사업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지원
			한 사항
			비즈니스달체계의 지원·육성
			및 산업화 지원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 복지 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	방안 수립
	보건의료 정책실	의약품정책과	질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 가족부	권익 증진국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고용 노동부	고용 정책실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
			위원회의 운영·지원
			영 및 이행 지원
			개발 지원
			원
			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의 지도·감독
교육 과학 기술부	교육 복지국	특수교육지원과	분계획 수립
			제도 개선
			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운영위원회 운영
			교육 지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수립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		
문화 체육 관광부	체 육부	
	국 장 도 지	
국토 해양부	국토 해양부 정책실	국토 해양부 정책실 국토안전복지과 국토약자전용 네트워크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교통수단 철도·전철역, 공항·항만, 도로,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 저하철, 항공기, 선박,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운영부서	기능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의 생활안전증진정책 총괄·조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개발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국	사청차권익증진과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보급
			수화방송 등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국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식약청	의료기기 심사부	치료기기과	휠체어 등 의료기기의 적합성 심사 및 허가
	의료기기 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행정처분 등)

표 80. 장애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소관 부처	운영국 (실)	운영부서	기능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 · 제와 그와 관련한 정책 · 제도개선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 제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조치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권리협약 기준 및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국 이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이행에 관한 연와 의견 표명